

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3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6. 14

제출자 : 장문혁 의원 외 5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3년 6월 21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가 발의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심 사 계 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(안)
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3. 활동기간

- 2013년 6월 21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장문혁 의원, 유인환 의원, 함명섭 의원, 박종욱 의원,
이정을 의원, 정문섭 의원

5. 운영계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 고
2013. 6.21 (금)	제1차 조례특위 (13:00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.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.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.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.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.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에 관한 조례안 9.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.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.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	